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부 11010-293
 시행일자 1995. 2. 25
 (정유) (제 1 안)
 수신 내무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Handwritten Signature]	
법무 담당관	[Handwritten Initial]		
법제계장	[Handwritten Initial]		
기안	이종범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개정지침 발령

1.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예규 제 599 호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599 호 2부. 끝.
 (제 3 안)

수신 도로시설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599 호(생략). 끝.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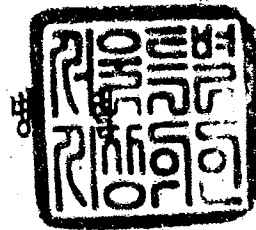
(기획관리실장 전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개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최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중 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굴착관련 기관의 다음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기간조정을 신청토록 하여 유관굴착 공사의 병행시행을 도모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부합되지 않는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9월중에 기간조정 신청공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굴착관련 부서의 다음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공고토록 개선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시행령제24조 및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0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 필요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승인·복구) 지침중 개정지침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승인·복구)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0” 을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0” 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이상 “시장” 이라 한다) “를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중 “(9월중)” 을 “(12월중)”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접수한” 을 “접수하면”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0,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와 사전기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0, ----- ----- ----- ----- ----- ----- ----- ----- ----- -----.</p>
<p>제2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대상 및 기준)</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공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기간조정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u>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u> 또는 구청장이 직접 기간조정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생략)</p>	<p>제2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대상 및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3조 (굴착신청 기간 공고) 시장은 매년 1회 (9월중) 15일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다음년도의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기간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3조 (굴착신청 기간 공고) ----- ----- (12월중)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 (굴착기간 조정 신청 처리)</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착기간조정 대상을 접수한 <u>현지조사와 소위원회의 예비 조정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u></p>	<p>제4조 (굴착기간 조정 신청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상을 접수하면 현지조사와</u>--- ----- -----.</p>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66~8/ 전송 731-6369

문서번호 도설58717-169

시행일자 1995.02.23

수신 법무담당관

선결	합의안		지시	
접	일자	05.2.23	결	방재국장 날
수	번호	751	재·공	
	처리과		합	
	담당자			

제목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 개정안

1.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예규 제574호, 1993.4.20)호와 관련
 니다.

2.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승인.복구)지침을 불입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 개정안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이은택
 도로시설과장